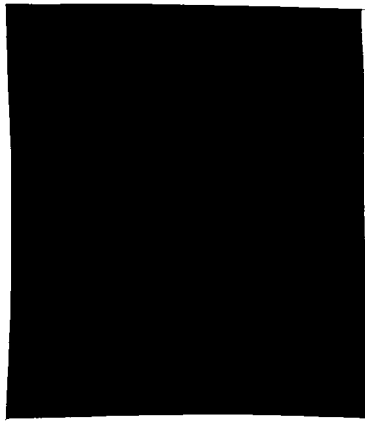


〔問〕 스프링크라 設備에서 아람체크밸브(ALARM CHECK VALVE)에 리타딩 챔버(RETARDING CHAMBER)가 없는 것이 있는데 리타딩 챔버가 없어도 設備의 機能에 있어서 支障이 없는지 또는 있어야 한다면 왜 필요한것 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 아람체크밸브는 스프링크라 設備의 流水警報裝置로서 이것에 리타딩 챔버를 부착하는 目的은 警報의 信賴度를 높이며 警報裝置의 保護를 爲한 安全裝置의 역할을 하기위한 것 입니다. 리타딩 챔버의 역할을 說明하면 우선 순간적으로 增減되는 壓力을 整化시키고 또한 순간적인 워터해머(WATER HAMMER)의 완충 역할을 해서 계속적이 아닌 순간적인 壓力을 上部에 連結되어 있는 프레스스위치(PRESSURE SWITCH) 및 워터모터공(WATER MOTOR GONG)에 傳國되지 않게하므로서 誤報를 막아주고 漏水에 依한 誤動作을 防止하여 줍니다. 또한 過度한 壓力은 自動으로 外部로 排出하여 주므로서 安全발브 역할을하여 配管內 및 프레스스위치의 無理한 作動을 防止하므로서 設備를 保護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스프링크라 設備의 維持管理上 리타딩 챔버는 꼭 必要한 裝置입니다.

〔問〕 屋內消火栓設備의 遠隔起動裝置를 自動火災探知設備와 連動되게 設置할수 있는 지요 또한 이경우 起動明示表示燈은 設置할 必要가 있는지 요.

〔答〕 屋內消火栓設備의 遠隔起動裝置로서 自動火災探知設備와는 原則적으로 連動시킬 수가 없습니다. 屋內消火栓設備은 手動操作에 依한 消火設



備이므로 사람의 操作없이 消火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自動火災探知設備와 連動하였을 경우 自動火災探知設備은 火災時 自動으로 警報를 發하게 되므로 火災를 感知 후 即時 펌프는 稼動될 것입니다. 그러나 消火作業은 火災感知 後 어느정도의 時間이 경과후 시작이 되므로 그동안에 펌프의 무리한 稼動으로 配管및 펌프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屋內 消火栓設備의 安全性을 고려할 때 自動火災

探知設備와 서로 連動하여 使用하는 것은 困難합니다.

萬一 自動火災探知設備와 可能하다고 할 경우 起動明示表示燈을 設置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起動明示表示燈은 加壓펌프의 起動裝置와 別途의 機能이므로 起動裝置를 他方法에 依하더라도 起動明示表示燈은 別途로 設置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屋內消火栓 施工方法의 간편화를 기하려는 이러한 方法은 바람직한 施工이 못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使用되는 遠隔起動裝置로서는 高架水槽를 利用하여 充分한 壓力을 갖일수 있도록 하는 方法, 壓力탱크를 사용하여 消火栓발브의 開放에 依한 方法과 現在 제일 많이 使用되는 消火栓函 옆에 ON-OFF스위치를 設置하여 遠隔起動操作하는 方法 등이 있습니다.

起動明示表示燈은 高架水槽에 依한 方法에는 必要없으며 그 外 펌프에 의한 加壓裝置에 있어서 起動明示表示燈을 設置하여야 할 것입니다.

金 根 仲

<點檢 2部 · 次長>

〔問〕 本人은 화재보험에 附  
保된 特殊建物の 一部를 賃借  
使用하던중 本人 從業員의 失火  
로 화재가 발생하여 同建物에  
相當한 被害를 受 罷, 建物所  
有主는 多幸히 保險會社로부터  
保險金을 支給받고 피해 복구  
를 완료하여 本人은 安心하던  
차 其後 保險會社로 부터 損害  
賠償請求 書翰을 接受하였습니  
다.

同損害賠償請求 근거와 重過  
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라도 損  
害賠償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  
부를 回信하여 주십시오.

(참고): 賃貸契約書上 賃借  
人의 責任으로 歸着할 事由로서  
財産價値를 減少시켰을 時는 其  
損害全部를 賠償함. 等의 내용  
이 約定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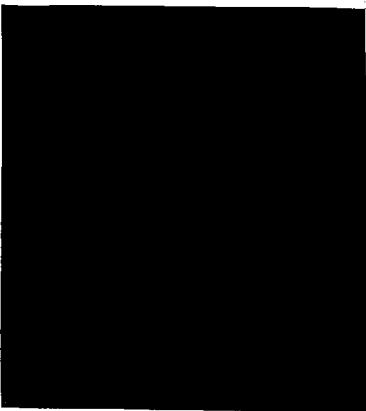
(答) 1 이 制度는 損害保險  
契約에서의 利得禁止의 原則에  
서 나온 것으로서 保險事由로  
인한 被保險者의 財産上의 損  
害를 補償하여 준 경우에 保險  
金 以外에 被保險者(建物所有  
主)가 다른 利益을 얻고 있을  
때에 (例: 保險金도 받고, 賃  
借人에게도 損害賠償을 받는  
경우) 그 利益의 歸屬을 保險  
者에게 돌리는 이른바 保險者  
代位制度에 근거하는 것입니  
다.

우리나라 商法 第681條와 第  
682條는 「保險의 目的」과 「第三  
者」에 대한 保險者代位를 各  
各 規定하고 있습니다(火保普約

第24條 참조).

貴下의 경우는 「第三者」에  
對한 保險者代位에 의한 것입  
니다.

保險者代位에 의하여 保險會  
社가 取得한 權利의 限度는 保  
險會社가 被保險者에 대하여  
支給한 金額의 限度까지가 됩  
니다. 즉 保險價額의 80%를  
保險에 부쳤을 경우에는 保險  
會社가 取得하는 權利는 80%  
만이 認定됩니다.



2)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法  
律第607號)에 의하면 失火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  
害를 加한 者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責任을 진다  
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重大한  
過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면 損  
害賠償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貴下의 경우는 保險金  
을 支給한 保險者가 被保險者  
(建物所有主)의 權利를 代位받  
고 賃借人이 賃借建物の 화재  
로 賠償의무 이행 불능으로 인

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貴下는 同建物の  
火災가 貴下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에 因한 것이라는 立證을  
다하지 못하면 貴下로서는 賠  
償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賠償  
責任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러나 이 경우 貴下는 同一建物  
인 경우에도 貴下가 使用中인  
賃借部分에 對한 損害에 대하  
여야만 賠償責任이 있으며 其  
外 他人이 使用中인 部分에 對  
한 연소피해는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아 賠償責任이  
없습니다. 끝으로 保險者代位  
는 民法上의 代位(民法  
제399조)와  
같은 性質로서 保險會社는 指名  
債權讓渡의 對抗要件(商法  
제450條)  
의 節次를 밟지 않고도 貴下에  
게 權利를 主張할 수 있습니  
다.

金 勝 濟

<業務部·次長>